

2020년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제2강 -“공항난민” 공항에 갇힌 사람들

강연: 최초록(사단법인 두루)
녹취정리: 고일해

“공항난민” 공항에 갇힌 사람들 (00:00~01:16)

네 안녕하세요. 전 두루 에서 일하는 최초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항난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공항난민을 공항에 갇힌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항난민 하면은 다른 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실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것은 영화 터미널 같은 사례일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영화처럼 낭만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떨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작년 재작년에 루덴도가족으로 불렸던 공항난민의 사례를 지원했었고 두루 하고 함께 지원했었습니다. 지금은 난민인권네트워크에서 구금워킹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난민인권네트워크 내에 출입국항워킹그룹이 있는데 여기서 하는 공항난민실태조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무래도 시리아난민 또 예멘난민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이 사람들이 공항에 왜 갇히게 되었나?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목차 (01:17~01:44)

오늘 목차는 요런 내용이에요. 난민신청이 실제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과 제도를 오늘 다 얘기하긴 어렵고 개괄하는 정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3번이 오늘의 주요한 내용인데 실제 인권침해 사례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보고 제도개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해 드리려 해요.

0. 들어가며 (01:46~05:06)

일단 들어가면서 제가 그 가족들을 대리하게 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공항에 있었던 게 장장 10개월 동안이에요. 사실은 말이 10개월이지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이었었는데 정말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으면서 그곳에 있었고 제가 보기에다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특히 아이들 정신건강을 체크하러 갔을 때는 아

이들하고 언어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소통이 어렵잖아요. 부모님하고 주로 접견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일이 많지가 않았었는데 아이들 중의 한 명이 저한테 핸드폰을 잠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심심한가보다 라고 생각하고 핸드폰을 건넸는데 거기서 메모장을 켜서 저한테 이모티콘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모티콘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그 이모지에서 학교 모양, 학교에 가는 모양, 이런 거를 여러 개를 보내면서 또 힘든 그런 이모지 그런거 저한테 보내서 학교에 가고 싶다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지 수개월이 지난 적어도 6개월은 지난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좀 충격을 받았었죠. 제가 갈 때마다 아이들이 굉장히 반갑게 맞아 줬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굉장히 언론에 보도는 많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실은 저랑 제 동료들은 이 사건이 언론에 주목을 그렇게 받을 줄은 몰랐었고 워낙 소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되게 좀 약간 당혹스러운 마음도 많이 있었고 너무 알려지게 되니까 여론도 반대 여론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그때 공항에 있을 때는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많이 됐는데 이분들이 입국하게 된 이후에는 보도가 거의 없었어요.

물론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를 하셔야 되지만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출국을 하고 싶다는 소식이 잘 알려지지는 않으면서 반대 진영에서는 여전히 불회부되었다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가짜 난민이라는 인상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죠. 저한테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항은 여행의 상징적인 곳인데 지금 제가 공항을 간다고 생각해도 굉장히 좀 우울한 공간? 으로 많이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그게 정말 더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이고 굉장히 끔찍한 공간으로 기억이 되고 있겠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구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금이 뭘까? 그 쇠창살 안에 갇히는 것 만이 구금이 아니라 자유롭게 어딘가를 나갈 수 없는 것,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것, 그런 자유의 박탈이야말로 구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했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인권의 사각지대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1. 출입국항 난민신청 현황 (05:07~05:13)

먼저 난민신청 현황입니다. 출입국항에서 정말 난민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 보겠습니다.

2014~2018년 출입국항 난민신청 현황 (05:14~06:42)

이 현황은 그 법무부에서 나온 자료로 동아에서 보도를 했던 자료이고요. 연도별로

출입국향 난민신청 현황을 보실 수 있는데 2014년에 제도가 실시되었고 이때는 신청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71건 중에서 회부된 게 26건 불회부된 게 47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깐 6.5 : 3.5 정도의 비율이었고요. 2015년에 급증 하는걸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시리아난민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이때 회부된 케이스가 많은 것은 시리아난민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서 회부가 결국에 된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 이후에 아마 출입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신청을 하고 들어올 수가 있구나. 여기에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배치가 되었을 것이고 2016년부터는 현저히 회부율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회색 그래프가 불회부 그래프인데 저 그래프가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017년에는 불회부율이 이 그래프상으로 계산을 해보니 85%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회부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2015년 이후에는 위장난민이 많아져서 불회부가 많이 되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2019년 출입국향 난민신청 현황 (06:43~08:13)

2019년에 현황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난민인권센터에서 발표한 현황 통계에 따른 것인데요. 한 해 동안 2018년 예멘 이후로는 그때는 좀 많은 사람들이 왔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줄어서 188건이 있었고 회부된 것이 이 중에 13건 6.9%였습니다. 굉장히 적은 수치인데요. 여기서 출입국향 이라고 하면은 공항이나 항구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올 거고 적은 케이스는 제주공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항구보다는 공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공항난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부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회부라고 하면은 공항에서 하는 심사는 자격 심사 그러니깐 사전심사에요. 이 사람이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심사해서 자격이 있다는 판단이 되면 회부가 되어서 본격적인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전심사를 거치지 못한 케이스가 굉장히 93~94% 이렇게 되는 것이죠. 2015년에만 잠깐 회부율이 높았었는데 그게 32% 정도였더라고요. 그게 아 2015년에 71%이었습니다. 그건 시리아난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2. 출입국향 난민신청 제도 개관 (08:14~08:23)

그래서 뭐 이런 신청에 따라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최대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보겠습니다.

법과 제도의 취지 (08:24~09:28)

먼저 이 제도가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졌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난민법 6조에 있고요. 난민법이 시행된 당시부터 있었던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정심사가 아니라 적격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본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지를 심사하는 것이고요. 이 취지가 무엇일까? 하면 공문서에 다 남아있어요. 법원 판결에서 뭐라고 했냐면 신속한 절차를 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남용하는 신청을 방지하고 심사 효율성을 제공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법이 만들어질 때 법 사이에서 심사보고서를 보면 특히 국경수호라는 입장에서 보면 재량이 굉장히 넓게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자의적 행정에 의해서 난민신청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송환되는 것을 한마디로 방지하겠다는 목적 이렇게 좋은 목적에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법과 제도의 취지2 (09:29~09:49)

6조에서 실제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난민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 일정한 장소에 7일 동안 머무르게 하고 그 기간 동안 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취지3 (09:50~10:32)

실제로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회부를 안 하는가 그러니깐 불회부 결정을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밑줄을 친 것이 제가 대리했던 사례에서 3호와 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회부 결정을 받았었는데요. 서류가 거짓인 경우 그래서 거짓으로 서류를 가지고 와서 난민신청을 하려고 한사람 다음에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신청에 그 자체로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 요런 경우에 회부가 되지 않습니다.

강제송환금지원칙 (10:33~12:03)

이 제도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반영한 제도예요. 그래서 임의의 제도라거나 한국에만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강제송환금지원칙이 무엇인가 하면 난민협약에 있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저희 난민법에도 반영이 돼 있는데요.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계약국인 대한민국도 의무로 가지고 있고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난민은 인정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일단 비호신청을 한 모든 사람이 난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난민인정 절차 자체가 그 난민을 심사에서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리상으로도 이 사람이 난민이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사람 전체가 난민에 당연히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제도가 문제는 좀 취지에 맞지 않게 심지어는 취지에 반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출입국에서 사람들을 돌려보내기 위한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제송환의 위험에 많은 난민들이 놓여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입국향 난민신청절차의 단계 (12:04~13:39)

신청 단계를 보시면요. 크게 3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접수하는 난민신청단계, 심사단계, 이때는 난민인정심사대기실이라는 곳에 7일 동안 있게 되고요. 처분 결과 통지라는 것은 불회부 결정을 받은 경우를 말할 텐데 이때 이 단계에 있게 됩니다. 이때는 송환대기실이라는 곳에 있는데 요새 2018년 이후에는 환승구역에 머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이유는 송환대기실이 법리적인 근거가 없는 곳이에요. 이 공간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이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고 그래서 2018년 이후에는 환승구역으로 가는 케이스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송환대기실에 있겠다는 약속서 서명을 따로 받지 않는한 전부 다 환승구역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 환승구역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터미널을 생각하시면 되고 면세점 있는 넓은 공간 전부 가 이 구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3번의 이 단계에서 난민에게 어떤 처우를 해야 되는지는 법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사실 굉장히 공백으로 있는 곳이고 책임이 분명하지 않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공간인 거죠. 항고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하고 나중에 간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①난민신청 단계 (13:40~14:33)

그래서 단계별로 간단히 좀 사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신청단계는 심사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 외국에 나갈 때도 그렇고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그렇고 여기서 보시는 입국심사대에서 심사를 받게 되죠. 여기서 난민신청의사를 바로 표시하시는 분은 조금 소수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들어와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난민인정을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고요. 뭐 소수의 경우에는 여기서 난민신청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심사를 해서 뭔가 비자에 문제가 있다든지 여권의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은 옆에 위치한 입국재심실이라는 곳에서 다시 검토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난민신청의사가 확인된다. 라고 하면은 다른 다

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②심사단계 (14:34~15:00)

그게 심사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고 회부 혹은 불회부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이 사진에 보이는 난민인정심사대기실 이라는 곳에 있게 되고요. 여기서 면접 조사도 받고 다양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내부를 보시면!

②심사단계 - 내부사진 (15:01~15:09)

이런 모습이에요 평상이 있고요.

저 공간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조금 오래된 사진일 수 있어요.

③처분결과통지 후 이의단계 (15:10~15:52)

그리고 나서 결과 통지를 받죠? 그러면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런 단계에 있게 되는데 송환대기실로 보내지는 경우에는 송환지시서가 그 항공사에 발부가 되고요. 그럼 강제로 송환을 시키겠죠? 그리고 대기실이라는 곳에 사실상 구금이 됩니다. 용역업체가 관리를 하고요. 출입국당국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항공사에서 납부를 하고요. 대부분 난민의 경우에는 장기 구금이 되겠죠? 나가길 원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환승구역에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 공항난민의 인권침해 사례 (15:53~16:01)

그래서 단계별로 제가 인권침해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3. 공항난민의 인권침해 사례 - 사진 (16:02~16:29)

이 사진은 법무부 블로그에 공개 해놓은 송환대기실 사진이에요. 송환대기실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아니고요. 송환대기실이라고 저희는 많이 부르는데 출국대기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정확한 명칭은 없습니다. 이 문은 마음대로 열 수 있는 문은 아니고 사실상 갇혀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사진인데 여기는 출국대기실이라고 쓰여 있어요.

3. 공항난민의 인권침해 사례 - 사진2 (16:29~16:36)

출국대기실이라고 쓰여 있는 사진입니다. 역시 마음대로 드나들 수는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1) 난민신청 의사표시 및 접수 (16:37~19:10)

그래서 신청할 때부터 해서 이의 할 때까지 굉장히 모든 단계에서 사실상 구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기간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송환을 압박을 하죠. 사실상 난민신청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신청서를 받아주지 않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내용은 난민지원네트워크 안내에서 2016년에 공항난민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고 거기에 되게 풍부한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따왔어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접수를 지연한 사례인데요. 제가 조금 띄엄띄엄 읽을게요.

“30분마다 출입국직원 혹은 항공사직원이 방문해서 돌아가라고 강요를 했어요. 그때마다 난민신청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출입국직원이 너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직원이 떠난 후에 4~5명 정도의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고 저와 가족의 모든 짐을 다 밖으로 꺼내고 저도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어요.”

실제로 강제로 끌어내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면 과연 신청을 할 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좀 사례를 찾아와 봤는데 뉴질랜드 사례가 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을 하고 있던데 난민신청자가 영어로 의사소통이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의사를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신청의사가 있으면 관련된 담당자한테 인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지침으로 두고 있고 거기 예가 있었어요. 박해를 당했다. 정치적 이유로 구금되었다. 이런 건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이고 그 외에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게 두렵다. 라고 하거나 뉴질랜드 유엔 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거나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경우에도 관련자에게 인계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난민신청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그 당국이 똑바로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신청서를 제대로 받아드려야겠죠. 특히 그 기한이 정확히 이야기돼 있지 않은데 신청접수기한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2) 난민심사 과정 - 통역시스템 미비 (19:11~20:48)

그래서 이 어려운 심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의사소통이 안되죠. 통역이 문제가 있다고한 분도 있었고 잘 되었다고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례를 보시면 통역인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사전을 꺼내서 통역을 하였고 진실을 확인한다. 는 간단한 문장인데 이 문장을 핸드폰으로 보여주면서 이대로 쓰세요. 그대로 받아 적으세요라고 하였고요. 내셔널서비스라는 말을 했는데 병역문제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둘째 날에 통역사가 왔을 때 같은 사람인데 첫째 날에 작성한 종이를 보여줬는데 그러니깐 본인이 난민신청자로 작성을 한 거죠. 작성한 것을 읽지를 못했대요. 통역해야 되는 분이신데 그리고 인터뷰 후에 그 기록된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때 본인이 얘기하지 않은 것이 적혀 있기도 했대요. 이런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 경우 이거든요.

이 면담조서라는 것은 난민인정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사실 좀 틀리지 않은 그런 만큼 중요한 조서입니다. 특히 한번 기재 된 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조서가 나중에 제대로 입국을 해서 난민심사를 받을 때 그 면접에서 만약에 다른 말을 한다면 어? 말이 바뀌었네? 너를 신빙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신빙성을 받아들이지가 않고 그러면 난민인정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까지 발생하는 것이죠.

2) 난민 심사 과정 - 실질적인 난민심사의 진행 (20:49~23:26)

그리고 난민심사를 할 때 사실상 실질적으로 난민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게 사전심사에 불과하다고 했고 자격이 있는지만 심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 면담은 난민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밖에서 하는 난민인정 절차에서 쓰는 양지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박해사항과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이게 제가 대리했던 분의 조서이거든요. 박해사항 관련해서 난민신청한 사연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브로드한 질문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답변은 했는데 그 답변 자체로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의아한데 이 조사관이 이미 대사관에 주이집트대한민국대사관에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증거 자료를 사실 조회를 한 거예요. 사실상에 이미 조사로 나아간 것이죠. 이 판결문이 진짜 인지를 이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가짜라는 답변을 받았대요. 이 공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짜라고 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한마디로 그렇게 물어본 거죠. 굉장히 당혹스러웠겠죠. 본인은 진짜라고 판결문을 가져왔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판결문은 전부 다 진짜였어요. 놀랍게도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에 나아갔고 심지어는 잘못된 답변을 받아서 실제로 박해를 받고 온 사람을 돌려보낼 뻔 한 것이죠.

캐나다에서 이 적격성 심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저희 심사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3일 이내에 신속 결정을 하고 있고 결정이 그 안에 못 하게 되면 회부되는 거예요. 회부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부적격 결정이 내려지는가 하면 예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타국에서 이미 난민지위를 받은 경우, 거기서 보호를 받을 수 있죠? 그다음에 미국에서 육로를 통해 입국한 경우, 미국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었죠? 다음에 안보 또는 형사법의 인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범죄도 그냥 범죄가 아니라 좀 심각한 범죄에 해당해서 유죄까지 받은 경우, 다음에 과거에 이미 부적격 결정을 캐나다에서 받은 경우, 다음에 불인정 결정을 이미 받은 경우, 이런 경우 그러니깐 난민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만 부적격하다. 라고 해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실질적인 난민심사에 나가고 있는 것이죠.

2) 난민 심사 과정 - 부족한 시간, 발언 기회 미보장 (23:27~24:09)

그리고 면접을 하는 동안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발언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있지 않았다고 얘기하신 분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욕적인 언행을 심지어 한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다른 설명을 하려고 하면 통역사가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질문에 대답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데 답변을 할 틈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말을 끊고 시간이 없으니 빨리 대답하라고만 했어요. 강압적인 분위기였고 위축되었어요. 인터뷰 중에 마치 내가 범죄자, 거짓말쟁이, 하찮은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했던 인터뷰입니다.

2) 난민 심사 과정 - 소지품 조사 (24:10~25:17)

그리고 소지품을 이 심사과정에서 조사를 합니다. 말하자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권한이 없죠. 권한이 없고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사기관도 아니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더 심각한데 우리 허락 없이 학위 그러니깐 가지고 온 서류, 휴대폰, 가방을 모두 수색했으며 가지고 온 증거 서류에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난민 지위를 위해서 온 것인데 마치 범죄나 나쁜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왜 여기에 응했냐고 하니 반항과 거부 없이 응했는데 거부하면 불법이라고 생각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안된다 고 하면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뭔가 거기서 거부의를 밝히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올 것 같아서 특히 인정받지 못하고 돌아갈 것 같아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 난민 심사 과정 - 여권 압수 관행 (25:18~26:51)

그리고 여권을 압수합니다. 이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가 하면, 제가 대리했던 분들은 공항에 터미널에 계시면서 생필품을 같은 것을 구입하려고 했어요. 공항에서 편의점 같은 데서 구입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뭘 구입 할 때 여권 제시를 하잖아요. 여권이랑 탑승권을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여권이 없으니깐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가입한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보면 여권을 심사하고 나서 여권을 소지자한테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인데 다만 위조여권이거나 타인의 여권인 경우에는 여권을 압수하도록 되어있어요. 이 규정의 근거해서 출입국에서는 여권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조여권이나 위명여권이 아닌데도 일괄적으로 불회부 처분을 받았으면 여권을 그냥 압수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주면은 여권을 훼손해서 송환을 못 시킨다. 이러한 내용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송환대상자 여권은 항공기 사업장에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는데 여기서 강제송환대상자는 국내에 입국했다가 강제퇴거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의미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입국금지를 받고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굉장히 넓게 해석해서 여기에 해당한다면 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3) 불회부 판정 이후 - 자의적 구금 (26:52~28:20)

그래서 불회부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상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구금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불복 방법 이라든지 처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법의 공백이죠? 송환대기실에 구금되는 경우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터미널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송환대기실에 있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수용이어서 위법하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 결정은 유지가 되었고요. 그러면 공항에 두는 것은 구금이 아닐까? 라는 의문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자의적 구금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를 박탈하는데 이렇게 뭔가 근거 없이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공항에 있는 것도 사실상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구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송환대기실에 있는 분들의 인터뷰인데요.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곳이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음식을 구입하려고 나가려고 했는데도 저지당했대요. 근데 이건 좀 특이한데요. 같이 머물던 외국인 중에서 담배 피우러 나갔다 온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의 생각에는 룩셈부르크 그러니깐 유럽사람 선진국 사람이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본인의 견해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대우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3) 불회부 판정 이후 - 송환대기실의 전반적 환경 (28:21~30:21)

송환대기실이라는 곳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원래는 송환대기실은 그다음 항공편에 송환을 위해서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하루 이틀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실은 공항에 저희가 대기하는 공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창문도 없고요. 식사는 제공되긴 하는데 삼시 세끼 치킨버거와 콜라가 제공됩니다. 남녀 방이 따로 있고 직원 공간이 있고요. 화장실이 있습니다. 외부와 차단되어있고, 창문이 없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24시간 동안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투명 벽이 있는데 직원이 감시가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침구가 부족합니다. 특히 시리아난민이 왔을 때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평상이 부족해서 바닥에 그냥 박스를 깔고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탁이나 건조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인터뷰 내용인데요. 전등이 계속 켜져 있었대요. 밤과 낮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읽어 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밤이라는 걸 언제 알았냐. 이불을 줄 때 알았대요. 알 수가 없어서 그리고 7~8개월 동안 송환대기실에 머무셨는데 평상 위에서 잠을 잤고 담요는 밤 10시에서 아침 6시 사이에만 제공이 되었습니다. 치약이 충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액체비누로 이를 닦으시는 분이 있었대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이를 못 닦은 경우도 있었고 아침에 오타가 났네요? 피가 나는 경우도 있었대요. 잇몸이 상해서 그렇겠죠? 그리고 개인용품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누가 새로 들어온 사람이 가져온 거를 같이 사용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대요. 7일 동안 샤워를 못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1 (30:22~30:36)

이건 실제 모습입니다. 어필에서 제공한 사진이고요. 버거 먹다가 빵 부분을 도저히 못 먹겠어서 남긴 것이고 투명유리 앞에서 평상에서 잠을 자는 모습입니다. 매트리스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자는 거예요.

사진2 (30:37~30:56)

이거는 세탁을 건조한 공간이 없어서 그냥 가방에다가, 박스에다가, 뭐 문틈에, 벽틈

에 건조하고 있는 그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인들이 이때 6개월 됐을 때 모습 이래요.

3) 불회부 판정 이후 - 불충분한 식사 (30:57~32:49)

제일 좀 어려운 부분 식사가 엉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삼시 세끼 버거가 제공되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난민심사대기실에서는 출입국이 관리하는데 식단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7일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죠? 그리고 난민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송환대기실은 없어요. 그런 모든 근거가 없고 실질적으로는 항공사운영협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개월까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여기서 식사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내용을 조금만 보면요. 화장실에 갈 수가 없었는데요. 음식이 엉망이니까 5개월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햄버거를 먹었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만두 1개와 콜라 한 캔으로 세끼를 채웠다. 심지어 양도 선택할 수 없어서 더 주지도 않았는데요. 그마저도 줄을 서서 먹고 수량이 떨어지면 못 받았다고 합니다.

아랍에서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무슬림인데 할랄식단이 없어요. 아예 그냥 먹을 수가 없거나 중간에 본인의 그런 것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아동에 대한 배려, 당연히 없고 임산부 배려 당연히 없겠죠? 아파서 좀 음식 바꿔 달라고 했는데 계속 똑같은 거 나왔고, 가지고 온 약을 먹으려면 빈속에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밥을 먹었는데요. 7일 동안 심지어 식사가 끊긴 적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주지 않겠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고요. 종교, 문화, 연령, 임신, 질병 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임의로 음식이 중단된 경우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3) 불회부 판정 이후 - 관계자의 협박과 폭언 (32:49~34:00)

그리고 관계자가 폭언을 하거나 심지어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기다리는 기간 동안 심지어 변호사를 찾은 이후에도 법원에 갈 수 있는데도 계속 돌려보내려고 했대요. 유엔난민기구에 전화를 했더니 변호사를 찾아준다고 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판결이 났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판결이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면 본인들 결정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민으로 있을 수 없으니깐 계속 돌아가라 라고 했고 경찰을 데려와서 억지로 태우겠다. 공권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심지어 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욕설을 하고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한국 사람을 만나면서 그 얘기를 들었던 걸 기억에 남아서 누가 봐도 어투가 좋지 않았겠죠? 그게 마음에 남아서 물어보니 그게 욕설 이었다.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에 연락할 거다.

정부에 연락할 거다. 이런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난민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에서 사실상 보호는커녕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3) 불회부 판정 이후 - 강제송환 시도 (34:01~35:21)

강제송환시도도 당연히 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서 짐 꺼내고서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고 아내가 떠날 수 없다. 라고 하니깐 아내한테 너 저 남자랑 가지 않으면 이혼해야 될 거다. 그 사람이랑 헤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협박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임신 상태였는데 앉아있던 매트리스 끌어당기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죠. 한국어로 계속 얘기하면서 떠밀고 억지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화장실로 도망가셨데요. 화장실 안에서 잠글 수 있으니깐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강제송환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용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이분들은 난민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없고 그냥 송환하라고 하니깐 난민인지 아닌지 그런 건 모르겠고 송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니깐 그걸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행을 못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막 협박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근데 출입국에서는 이 송환시키는 것은 항공사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실은 이 불회부 결정을 내린 것은 출입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입국 당국의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을 서로 회피하고 있죠.

3) 불회부 판정 이후 - 열악한 의료접근권 (35:22~36:30)

제일 문제일 때는 아플 때예요. 몸이 아파서 연락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출입국에 얘기해라, 항공사에 얘기하면 출입국에 얘기해라, 출입국에 얘기하면 항공사에 얘기해라 서로 권한이 없다고 하고 울면서 부탁을 했는데도 안 되고 결국에 쓰러질 지경이 되니까 휠체어에 태워서 어디론가 병원을 데리고 간 거예요. 공항 내에 있는 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데려간 거고 거기는 계속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오는 곳이 때문에 본인과 관련된 전문의가 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파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10달러를 가져가서 비타민C를 가져다줬데요. 그리고 서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끼리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은 전염병이 노출이 되는 거죠. 굉장히 불안했대요. 당연히 모르는 사람들과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고 또 무섭기도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왜냐하면 본인이 여기서 돌아가겠다고 하거나 뭔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더 상황이 나빠질까 봐 특히 가족들과 온 경우에는 더 그런 두려움이 심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 불회부 판정 이후 - 열악한 의료접근권2 (36:31~39:23)

의료접근권 관련해서 제가 대리했던 경우에도 아픈 경우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공항이 굉장히 건조하고 24시간 불 켜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도 최악이기 때문에 모두가 건강한 사람도 아파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가장 많이 호소하신 것은 위장병, 피부병, 호흡기질환, 이런 것들이고 혈압 문제가 생기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아프신 경우에는 '임시상륙허가'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신청권자가 항공사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신청할 수가 없어요. 혹은 당사자도 직접 신청을 할 수 없어요.

항공사에 계속 호소를 해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공사에선 당연히 안 해주겠죠. 왜냐하면 임시상륙허가를 받아서 외부에 있는 병원에 가려면 본인들이 동행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고 비용도 부담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임시상륙허가를 출입국이 해주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해주는 것이죠.

제가 대리할 때 가족 단위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픈 사람은 계속 아팠어요. 한 번에 한 명씩 밖에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이 아픈 사람, 지금 당장 안 나가면 안 될 사람 위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기에 같이 주로 갔던 분이 아내분과 아이 중에서 귀에 뭐가 들어간 친구, 위장장애가 있는 친구를 계속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나중에 선생님을 동행해서 왕진을 가보니까 아버지가 본인은 괜찮다고 임시상륙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인이나 아이들에게 양보를 했는데 진단을 해보니까 혈압이 너무 높아서 그분이 두통을 계속 호소를 하셨었는데, 저희는 그게 그냥 거기 있다 보니까 아프겠지 라고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혈압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혈압이 그때 재었을 때 200에 160, 200에 180 이렇게 가 나왔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앰블런스 당장 실려 가도 이상하지가 않다. 라고 할 정도. 그분의 상태가 가장 심각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그때 같이 갔던 의사 선생님께서 한겨레에 있었던 칼럼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임시상륙허가로 나갔던 친구가 아동이 7살이었는데 외이도염 아이들이 이런 것을 호소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밖에서 항생제만 먹으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귀에 있는 거 빼고 근데 한 달 동안 치료를 못 받았어요. 거기서 피고름이 나는데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여기 갔을 때 느꼈던 절망감 그런 거를 많이 전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3) 불회부 판정 이후 - 외부 소통 단절 (39:24~40:15)

그리고 외부소통이 단절 돼 있습니다. 인터뷰를 했던 24명 중의 17명이 외부 조력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여쭙봤더니 알지 못해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난민법 7조에 보면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사항 게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도 인천공항 출입국이 있기 때문에 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접수 방법이나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혹은 게시가 되어있더라도 한국어나 영어로 게시가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아랍어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3) 불회부 판정 이후 - 외부 소통 단절2 (40:16~41:00)

인터뷰를 마찬가지로 보면요. 우리가 유엔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요청을 했는데도 직원이 거부했습니다. 송환대기실에 간 뒤에 하루 이틀이 지나고서 직원한테 유엔난민기구에 연락해달라고 했더니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를리가 없죠. 당연히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다른 방에서 인터넷 사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저지되었어요. 오히려 터미널에 나오면 인터넷 사용을 와이파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송환대기실에는 잘 안된다고 해요. 외부의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인터넷 사용할 수 없었고, 핸드폰 압수당했고, 핸드폰 있다 해도 심 카드가 없어요. 인터넷도 안됐어요.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3) 불회부 판정 이후 - 변호인 접견권 침해 (41:01~44:56)

그래서 문제 되는 거는 불회부 결정에 대해서 뭔가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전문가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호인을 포함해서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과 법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명시적으로 법을 위반해서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시리아난민 사태 때 다뤄서 변호인 접견권이 인정이 되었고 지금은 신청을 하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접견을 했는데 못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출입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하면 월요일에 접견하려고 이미 신청서를 넣어놨어요. 근데 주말에 송환을 시켜요. 가서 혹은 연락을 해봤더니 그 사람이 없대요. 송환됐대요. 그리고 일요일날 신청서를 넣었어요. 일요일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거기도 당연히 당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요일날이라 안 된대요. 그리고 환승객 그러니까 한국으로 입국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국을 거쳐서 다른 데로 가시는 분이었는데 환승객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신청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변호인 접견권이 없다고 거부했어요. 이게 이런 접견권이 침해된 사례가 복수

의 변호사 활동가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루렌도가족의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을 했죠. 저희가 소송 1심을 준비하는 4개월 동안 이 소송을 위해서 접견을 갔던 게 7번이더라고요. 한 달에 3~4번 정도 갔던 건데 가면은 오후 시간 내내 면담을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면담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절차가 원래 출입국이 동행을 해야 되는 절차거든요 물론 인터뷰할 때 그 안에 들어오진 않는데 본인들 출근 시간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피해서 1시 쯤 가가지고 퇴근 시간 6시까지 면담을 합니다. 근데 그 공간이 그게 몇 평정도 되는지 제가 잘 감을 못 잡겠네. 한 3평 정도 될 거 같아요. 3평 정도 되는 공간에 저희에 케이스는 9명 그러니깐 가족 6명하고, 변호사 2명, 통역사까지 1명, 해서 9명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 가지고 5시간 동안 통역을 거쳐서 숨도 못 쉬고 인터뷰를 해요. 물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막 사가요. 밖에서 사가거나……. 그러면 두통을 호소하는 혹은 복통을 호소하는 이분들과 이 아픈 밀폐된 공간에서 계속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접견권이 제대로 행사가 되고 있는 건지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소송을 거쳐서 저희의 경우에는 이겼는데 그 법원의 판단은 출입국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죠. 그러면 원래 입국해야 되는 사람인데 출입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입국을 못 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을 저희가 만나지 못했다면 송환이 됐겠죠? 그러면 이거를 누가 책임질 수가 있을까요? 혹은 송환을 시키겠다고 해서 이 사람이 10개월 동안 있었던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강제 송환이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난민 제도 자체가 원래 목적이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방치를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사실 강제송환을 시키면 보호를 못 한 거거든요. 책임을 방기한 거거든요. 저는 이게 사형을 집행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행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사진1 (44:57~45:18)

이것은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진입니다. 저희가 대리했던 가족이고 여기서 주무시고 생활을 다 하셨어요. 여기서 아이들이 밥도 먹고 생활을 했죠. 실은 청결 문제, 위생 문제도 좀 심각했어요. 여기서 계속 빵을 먹으면서 버티셨습니다.

사진2 (45:19~45:37)

이분들이 가지고 온 트렁크가 4개였어요. 가족들이 6명인데 최소한의 짐만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나중에 입국할 때 보니까 여기를 지나는 분들이 계속 물건을 갖다줘 가지고 산더미같이 많은 짐을 가지고 나오시게 됐더라고요.

사진3 (45:38~45:50)

이것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파에서 자거나 아니면 다른 공간 잘만한 공간 찾아서 아이들이랑 엄마가 잠을 자고 있는 그건 모습입니다.

4. 나가며 (45:51~45:46)

나가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공항난민과 관련된 활동 (45:57~46:45)

저희가 공항난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야말로 재미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헌법소송도 하고요. 인권위 진정도 하고 유엔에다가 진정도 하고 법무부랑 소통도 하고요. 언론대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운동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법 제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송 당연히 많이 했고요. 여권인도청구소송 이라든지 구금이 되는 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이런 것도 새로 생각해서 하고 있고요. 관련 연구와 집필을 많이 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함께 연대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제도개선 방향 (46:45~47:39)

그리고 제도가 개선이 돼야겠죠 당연히……. 저는 실은 그냥 취지에 맞게만 운영을 하면 제대로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출입국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운영이 될 거 같아요. 난민이 무엇인지, 난민이 누구인지, 이대로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만 이해를 하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죠. 불회부 된 뒤에 불복절차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가 제대로 제공 돼서 불복절차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무엇보다 공무원이 증원되고 제대로 된 통역인을 확충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난민이 누구 인지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문 (47:39~48:12)

이것은 저희가 받았던 판결입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했었거든요. 2심에서 1심판결을 취소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승소했다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원고들에게 했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취소를 통해서 입국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판결 날 바로 한 것은 아니고 한 2주 정도 시

간이 걸렸습니다. 내부 절차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요.

사진1 (48:12~48:21)

이건 언론에 보도된 당시의 사진입니다. 기쁜 얼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진2 (48:21~48:48)

그리고 입국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데 놀이터에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놀고 있는 사진이고 그때 친구들이 “애네들 또 언제 와요?”라고 물어보면서 같이 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표정이 확연히 밝아져서 제가 보기에도 참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48:48~50:17)

이런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 두루요? 여기 있으니까 마침 소개를 드리면 되겠네요. 저희 두루는 공익소송, 공익활동, 공익연구를 주로 하는 단체이고요. 주요 분야는 4분야입니다. 장애, 국제인권, 아동청소년인권, 사회적 경제 이렇게 4분야이고 국제인권의 활동 일환으로 이주민과 난민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 영향에 관한 활동도 하려고 분야를 늘렸어요. 공항난민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인 소송도 하고 있지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공항난민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항난민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분들을 모두 동원해서 함께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도 가능하고요. 저희 일반 후원도 받고 있고 당연히 연대나 이런 것들은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